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7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 박상혁·강준현·김윤덕

김정호 · 김홍걸 · 민형배

신동근 · 어기구 · 이동주

이정문 · 임종성 · 정일영

조응천 · 최인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·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된 오피스·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43조제1항). 나.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, 약정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함(안 제43조제3항, 안 제57조의2제2호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"주택으로서"를 "건축물로서"로, "주택"을 "주택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(이하 "매입약정"이라 한다)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차장 기준에 따를 수 있다. 다만, 민간사업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7조의2 중 "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"을 "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자
- 2. 제43조제3항 단서의 매입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사업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제43조(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 제43조(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 택 매입)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| 택 매입) ① -----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 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 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물로서-----규모 및 기준의 주택(이하 "기 존주택"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u><신 설></u>

≠	∕\ \	뛴

-----주택 등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공공 이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 결(이하 "매입약정"이라 한다) 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차 장 기준에 따를 수 있다. 다만, 민간사업자는 「주택법」 제49 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건 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 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하 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는 시장·군수·구청

③ (생략)

제57조의2(벌칙) 제32조의3을 위 제57조의2(벌칙) <u>다음 각 호의</u> 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자는 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-----.

- 1.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토지 를 전매한 자
- 2. 제43조제3항 단서의 매입약 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사업자